

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# 심 사 보 고 서

'97. 2. 19  
기획경제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'97. 2. 11

○ 회부일자 : '97. 2. 11

다. 상정일자 : 제14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

○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 상정 ('98. 2. 19)

·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

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 : 공업경제국장 박 환 규)

### 가. 제안이유

○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6항 및 산업단지 관리지침 제4조1, 2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관리의 전문

화 및 산업단지 시설의 유지관리와 입주기업체의 건전한  
육성발전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입주기업체협의회로  
관리업무를 위임 및 위탁하고자 동조례를 개정코자 함

## 나. 주요골자

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현도지방  
산업단지의 위임·위탁기관을 청원군수에서 현도지방산업단지  
입주기업체협의회로 변경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: 김 태 인)

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 
검토한 바

이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2항 동법 제31  
조6항 및 산업단지관리지침 제4조1, 2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  
단지 관리기관을 입주기업체협의회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

주요골자에 있어서는

현도지방산업단지관리권한 위임·위탁기관을 청원군수에서 현  
도지방산업단지입주기업체 협의회로 변경하여 산업단지 관리  
의 전문화 및 산업단지 시설의 유지관리와 입주기업체의 건전  
한 육성발전 등 효율적 관리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 (참석 5명, 찬성 5명)

8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10. 심사보고서 붙임서류

- 충청북도사무의위임 및 위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
- 신·구조문 대비표